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한교육기관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부터 교육연구시설, 종교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음.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시설·설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, 각 유형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관계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·설비의 특성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유형 신설(안 제2조제2항)

- 1) 대안교육기관을 시설·설비의 특성에 따라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안교육기관은 시설·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: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
2.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: 주거 공간 외 교육, 종교, 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시설·설비의 등록기준 등) ① (생 략)	제2조(시설·설비의 등록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	② <u>대안교육기관은 시설·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u>
	1. <u>가정형 대안교육기관 : 단독 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</u>
	2. <u>일반형 대안교육기관 : 주거 공간 외 교육, 종교, 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</u>
<u><신 설></u>	
② · ③ (생 략)	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31